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1999.7.15>
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제조업자
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(제47조관련)

구 분	기 준
1. 제조시설	가. 보안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. 건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다. 전기공작물 등 일반장치에 관한 사항 라.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. 경계요원의 수 및 장비에 관한 사항
2. 제조방법	가.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. 위험작업 일반에 관한 사항 다. 포장 및 수함에 관한 사항 라. 폭발시험등의 시험 및 폐약처리에 관한 사항 마. 및 바. <삭제>

(주) 제조하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의 종류마다 작성할 것